

『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5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5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5월 25일

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김 인 중

나. 제안이유

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「역모기지제도」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재산세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」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㎡ 이하,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 중 연금보증으로 금융기관에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%를 경감토록 하는 조항 신설 (안 제6조의2)

라. 참고사항

-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 제9조제2항,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
- 경상북도 세정과1726(2006.11.01)호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(행정자치부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
 -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과 「역모기지 제도」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임
- 주요 개정내용은
 -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「연간 종합소득이 1,200만원 이하」인 고령자가 소유한 「전용면적 85㎡ 이하이고,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」 중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
 -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